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64 호 2019. 3. 7.(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2회[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3회[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39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43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0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270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279회[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284회[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3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285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송달 공고]... 3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득권 (인)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제6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근거가 되는 법령 포괄적으로 규정(제1조, 제4조제1항제1호)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

(변경)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나.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 변경(제4조제1항)

- 제명 및 문구 변경(제2호)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변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근거법령 명시 및 명칭 변경(제3호)

(기존) 버스 및 택시 정류소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는 중복 규정이므로 조례에서 삭제(제4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제6조,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젓소·말·사슴·양·돼지·개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오리·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 8.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 1.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 2.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 3. 그 밖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중인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기존 가축사육자 등에 대한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재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으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1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함
 -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능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
-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학교보건법」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 : 자연공원(국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구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소
 - 「의료법」 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 축종별 거리제한

- 소 100m, 젓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 ▶ 축종별 거리제한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비고>

1. “거리“는 주거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여러 축종을 사육할 시 제한거리의 적용은 제한거리가 긴 축종의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지정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및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정의 일부 삭제(제2조)
-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제3조)
 - (기존) 동별 제한 → (변경) 주거밀집지역 등 축종별 거리제한
 - 축종별 주거밀집지역 등 이격거리 제한
(소 100m, 젓소 250m, 돼지 800m, 닭·오라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 다.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사육자 의무사항 신설(제4조)
- 라.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의무사항 신설(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2. 28.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A=3m², 우수관 매설 L=15m)
3. 점용·사용의 장소 : 달천동 892-18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 108m² 영구 : 13m²
 - 나. 기 간 - 일시: 2019. 03. 04. ~ 2020. 03. 03.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신명산업개발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731, 1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4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종전주소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박상진3로 14	송정16길 26	2019. 3. 7.	출입구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3.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270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심사 등(안 제2조 ~ 제3조)
-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안 제4조 ~ 제5조)
-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안 제6조 ~ 제7조)
- 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재산의 인도(안 제8조 ~ 제9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4조의3
- 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과
- 전화번호 : 052)241-7531, 팩스번호 : 052)241-751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전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

정한다.

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3. 울산광역시장이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7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신설 2018. 3. 27.>

수수료(제52조의3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공 매 진 행 단 계	수 수 료 율	최 저 수 수 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채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	1.2%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를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18. 3. 27.>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 관 장 소	비 고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장 귀하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설 2018. 3. 27.>

행정 기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분	품명	보관장소	비고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2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위치 및 추진사업(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이용시간, 시설대관, 수강료 등(안 제4조 ~ 안 제10조)
- 다. 운영 위탁 등(안 제11조 ~ 안 제15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33, 팩스번호 : 052)241-733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복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일요일 : 09:00 ~ 18:00
2.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복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전액감면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세 자녀이상 자녀를 둔 가정
8.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자
9. 65세 이상 노인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반환
2.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반환
2. 강좌 수강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 ①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

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전화번호	자택	
				H·P	
	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신청사항	시 설 명				
	사용목적 (용 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일간)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음악연습실 다목적홀	1회, 2시간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2. 강좌 수강료

기준	수강료	비고
강좌당(1명, 1분기)	30,000원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9-28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상태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2019.3.7.~2019.3.22.(14일 이상)
3. 위반업소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
일반음식점 (제2016-0254201호)	동네포차	북구 염포로 739, 지상1층 (염포동)	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 폐쇄 (2019. 2. 1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제2016-0254524호)	주)선광물산	북구 진장17길 10 지상1층 (진장동)	배**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 폐쇄 (2019. 2. 12.)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무단철설)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6.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41-7784)
7. 유의사항

가.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나 우리 구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9-28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처분의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따른 영업소 폐쇄
- 2. 공고기간: 2019.3.7.~2019.3.22.(14일 이상)
- 3. 위반업소내역

업종	업소명	영업소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러브엔젤	북구 화봉로 74, 지상2층 (연암동)	송**	영업소의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2019.2.1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예거스톱스	북구 방어진순환도로 1421 (염포동)	안**	영업소의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2019.2.1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한국허벌 라이프	북구 수박골2길 33 (호계동)	김**	영업소의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2019.2.18.)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소의 시설물 전부 철거
- 5.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 6.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41-7784)
- 7. 유의사항

- 가.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나 우리 구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